



감정평가서 전자서명(원본) 증명서

《기본 정보》

감정서번호	HAF2026-04-013-L
평가금액	13,225,000 원
평가기관 / 평가자	합천감정평가사사무소 / 김석천
서명해쉬 페이지수	총 28 페이지

《서명자 정보》

구분	소속 / 성명	서명해쉬(일부)	서명시간
담당평가사	합천감정평가사사무소 / 김석천	eyJhbGciOiJFUzI1Nils	2026-02-02 20:26:00.0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본 감정평가서임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의거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생성된 원본 감정평가서로,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며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본 문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99-2번지 토지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2025-16989-A01)

감정서번호: HAF2026-04-013-L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합천감정평가사사무소

TEL. 055-932-2704 FAX. 055-934-2704

(토지)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석천

(인)

감정평가액	일천삼백이십이만오천원정 (₩13,225,000.-)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감정평가 목적		공매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현열 (2025-16989-A01)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 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2026. 02. 01		2026. 02. 01	2026. 02. 02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m ²)	종류	면적 또는 수량(m ²)	단가	금액
	토지	529	토지	529	25,000	13,225,000
		이	하	여	백	
	합계					₩13,225,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99-2	전	계획관리지역	529	529	25,000	13,225,000	지상수목포함
합 계								₩13,225,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소재 '성북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농업용부동산(토지)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의 공매(국세,지방세)를 위한 감정평가 건임.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6년 2월 1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6년 2월 1일에 실시하였음.

4. 감정평가조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II. 기타 참고사항

1. 물적 동일성 여부 및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여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2. 임대사항의 확인

미상임.

3. 기타 참고사항

- ① 본건 지상에 소재한 자연생 수목은 별도의 경제적가치가 미미하며,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② 본건 토지의 지적은 측량성과도에 의한 것이 아닌 지적공부에 의하고 지적경계는 주위의 지형, 지물,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니 정확한 지적경계 및 그에 따른 현실저 이용상황 등은 별도 경계측량 등을 요하는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V.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99-2	
토 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이용상황	전
	지 목	전
	면 적	529 m ²

V.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V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text{감정평가액} = \text{토지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1. 토지 감정평가액

(1) 대상 토지의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
1	웅양면 동호리 199-2	529	전	전	계획관리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지	10,600

(2) 토지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6년 공시지가 (원/㎡)
A	웅양면 동호리 225	577	전	전	계획관리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지	10,800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A 계획관리	0.029	경상남도 거창군 (26.01.01~26.02.01) 2025.12.01 ~ 2025.12.31 : 0.028 (1 + 0.00028 * 32/31) ≒ 1.00029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개별요인 비교

■ 농경지대(전) [일련번호1 / 표준지A]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0.9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시 본건이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9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인근 토지의 가격수준

구 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기타
본건 인근	순수 농경지대	세로변	24,000-30,000	계획관리

본건 지역의 지가수준은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다) 본건 평가사례

본건의 최근 3년 이내의 평가사례는 포착되지 아니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²)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²)	비고
(1)	웅양면 동호리 228	2,509	계획관리	전 전	2021.02.23	담보	27,000	-
(2)	웅양면 동호리 134	1,058	계획관리	답 답	2024.03.25	담보	28,000	-
(3)	웅양면 동호리 239	1,394	계획관리	전 전	2021.10.27	담보	25,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마) 인근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웅양면 동호리 280	계획관리 전/주거나지	6,510,000원 (@ 29,000원/m ²)	2023.06.19 -	225m ² -	-
	의견	1) 2) 토지가격 : 6,510,000원 / 225m ² ≒ 29,000원/m ²				
#2	웅양면 동호리 317-1	계획관리 전/전	17,660,000원 (@ 24,000원/m ²)	2021.02.16 -	727m ² -	-
	의견	1) 2) 토지가격 : 17,660,000원 / 727m ² ≒ 24,000원/m ²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경매 동향

용도별	경남 거창군 2025년 02월 ~ 2026년 01월					
구 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근린주택	994,038,800	689,999,998	69.4	5	2	40.0
단독주택	1,751,608,900	1,025,859,999	58.6	61	11	18.0
과수원	720,572,000	444,889,990	61.7	11	3	27.3
답	2,866,577,220	1,627,334,827	56.8	159	24	15.1
대지	129,985,200	84,061,000	64.7	46	6	13.0
임야	963,594,320	427,377,410	44.4	74	9	12.2
잡종지	103,873,000	30,030,000	28.9	3	1	33.3
전	3,527,962,020	1,142,284,000	32.4	123	19	15.4

(출처 : 인포케어)

(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①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② 보정치 산정

< 비교표준지 A>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a)	사례단가 ¹⁾ (원/㎡)	시점 ²⁾ 수정	지역 ³⁾ 요인	개별 ⁴⁾ 요인	산출단가 ⁵⁾ (원/㎡)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28,000	1.01016	1.000	1.000	28,284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b)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⁵⁾ (원/㎡)	2.618	2.61
	10,800	1.00029	-	-	10,803		

¹⁾평가사례 : 비교표준지A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2)을 선정함.

²⁾시점수정(2024.03.25 ~ 2026.02.01,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 1.016% (1.01016)

³⁾지역요인 : 비교표준지A는 평가사례(2)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⁴⁾개별요인 : 비교표준지A와 평가사례(2) 대비시 제 개별요인 대등함.

개별요인 비교치 (농경지대(전))					격차율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00	1.00	1.00	1.00	1.00	1.000

⁵⁾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절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시산가액 (단가)(원/㎡)	비고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							
1	A	10,800	1.00029	1.000	0.900	2.61	25,376	25,000	농경지대 (전)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의견	비교 거래사례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1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웅양면 동호리 280	계획관리 전/주거나지	6,510,000원 (@ 29,000원/㎡)	2023.06.19 -	225㎡ -	-
	의 견	1) 2) 토지가격 : 6,510,000원 / 225㎡ ≒ 29,000원/㎡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다.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1 계획관리	1.349	경상남도 거창군 (23.06.19~26.02.01) 2023.06.01 ~ 2023.06.30 : 0.050 2023.07.01 ~ 2023.07.31 : 0.041 2023.08.01 ~ 2023.08.31 : 0.024 2023.09.01 ~ 2023.09.30 : 0.035 2023.10.01 ~ 2023.10.31 : 0.034 2023.11.01 ~ 2023.11.30 : 0.030 2023.12.01 ~ 2023.12.31 : 0.046 2024.01.01 ~ 2024.12.31 : 0.677 2025.01.01 ~ 2025.12.31 : 0.407 2025.12.01 ~ 2025.12.31 : 0.028 $(1 + 0.00050 * 12/30) * (1 + 0.00041) * (1 + 0.00024) * (1 + 0.00035) * (1 + 0.00034) * (1 + 0.00030) * (1 + 0.00046) * (1 + 0.00677) * (1 + 0.00407) * (1 + 0.00028 * 32/31) \approx 1.01349$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개별요인 비교

■ 농경지대(전) [일련번호1 / 거래사례#1]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0.85	본건이 사례 대비 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85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시산가액 (단가)(원/m ²)
	일련 번호	토지단가 (원/m ²)						
1	#1	29,000	1.000	1.01349	1.000	0.850	24,982	25,000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5)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가. 토지 시산가액(단가) 검토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m ²)	거래사례비교법 (원/m ²)	비고
1	25,000	25,000	-

나.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되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유사하게 산정되어 수요성·환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목적에도 부합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VII.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
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	토 지	13,225,000
	합 계	13,225,000
결정의견	공매로서의 안정성과 환가성 등을 참작하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참고가격 자료(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를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상기 평가액으로 대상부동 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2. 기타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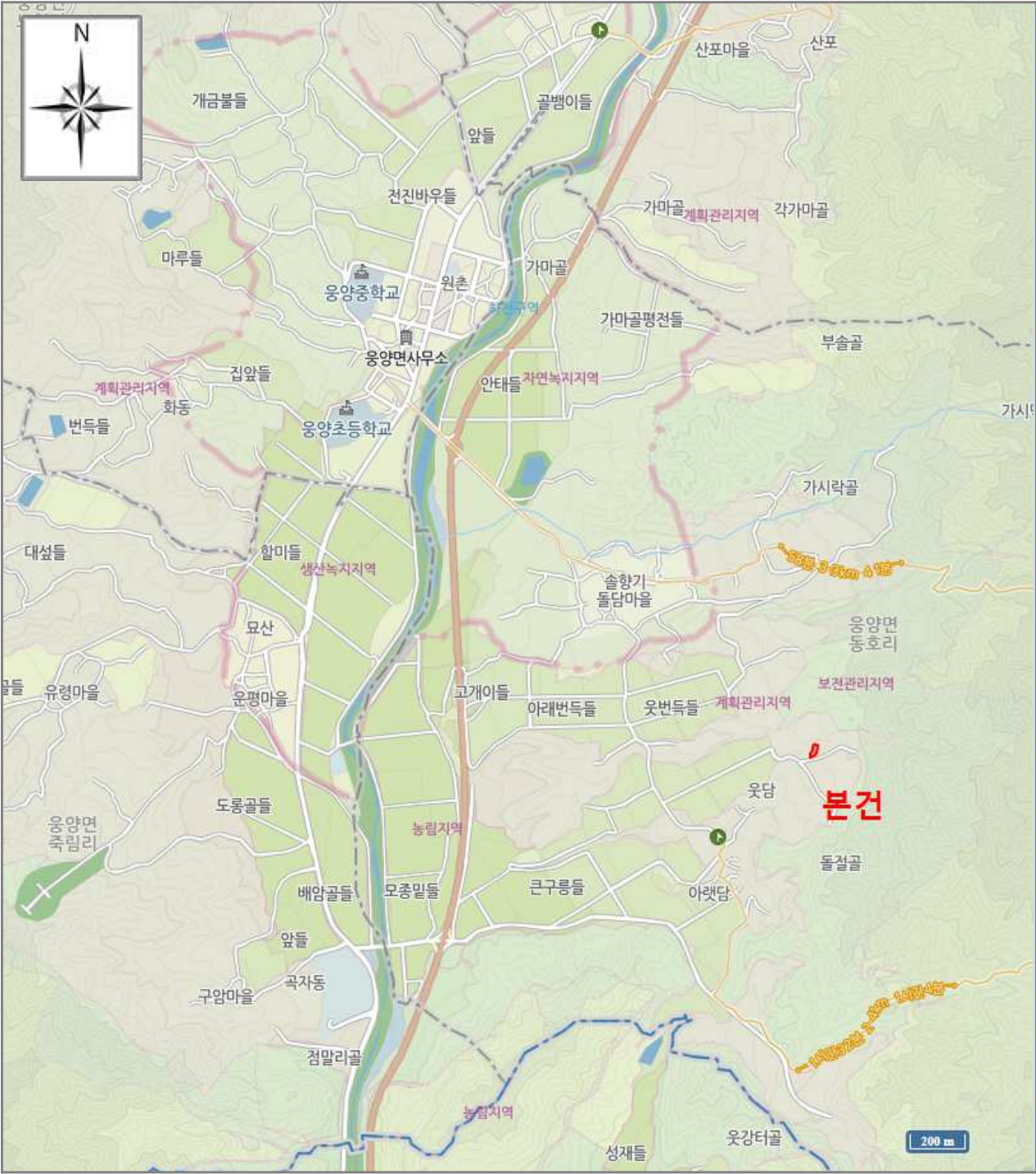
없음.

(토 지) 감정평가요항표

기 재 사 항	내 역
위 치	본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소재 '성북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함.
주 위 환 경	부근은 사과나무 과수원, 농경지, 순수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임.
교 통 상 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면 외곽지대에 위치하여 관내 대중교통 사정 보통 이하임.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세 및 이용상황	서하향 환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휴경지상태 이며, 지상에 관리치 않은 자연생 상태의 수목이 소재함.
도 로 상 태	맹지상태임.
제시목록외의 물건 (구조 및 규모, 이용상태, 영향)	-.
공부와의 차이	-.
임대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 타 사 항	-.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99-2번지
-----	--------------------------



[범례]

■ 본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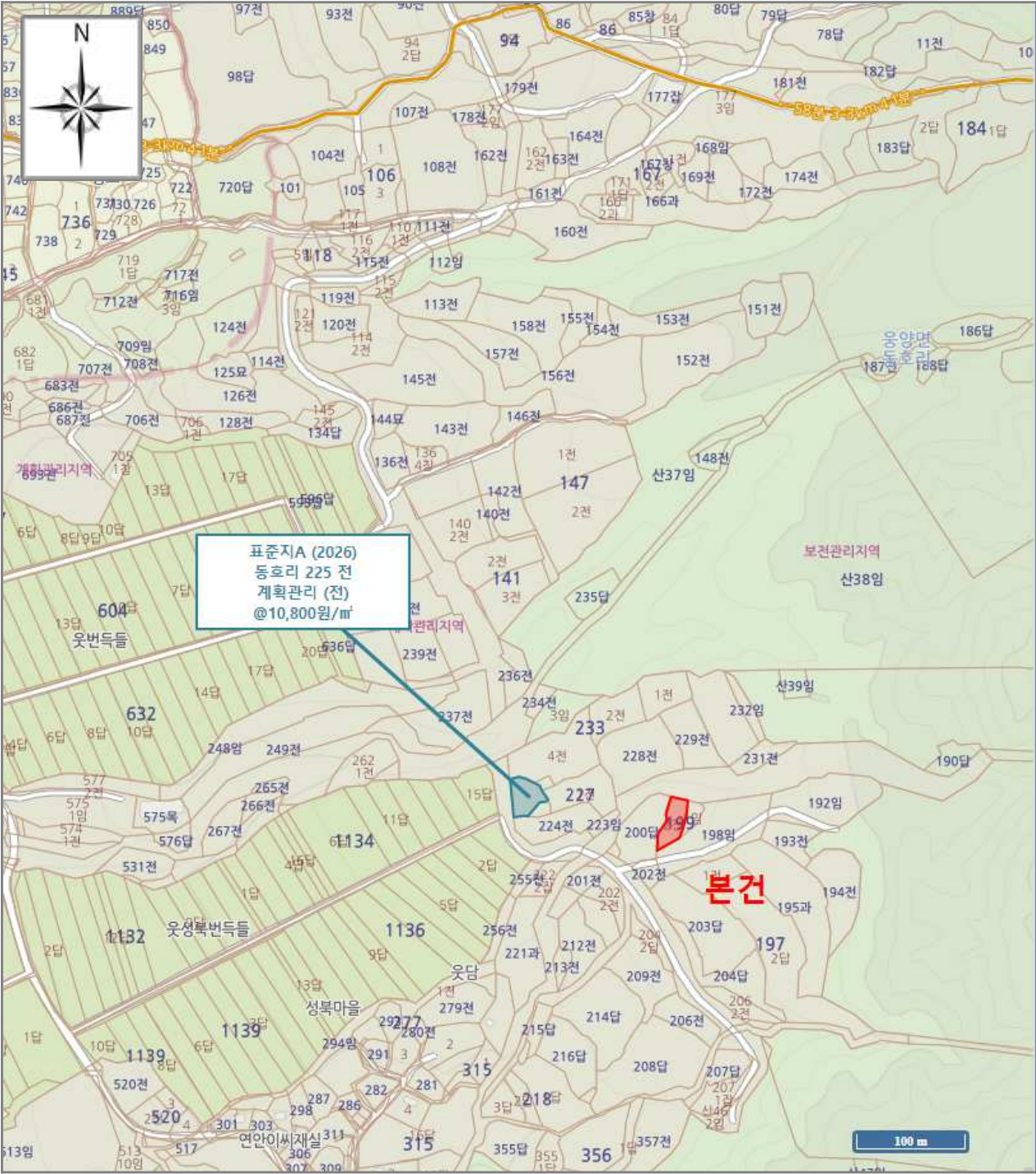
■ 표준지

■ 평가사례

■ 거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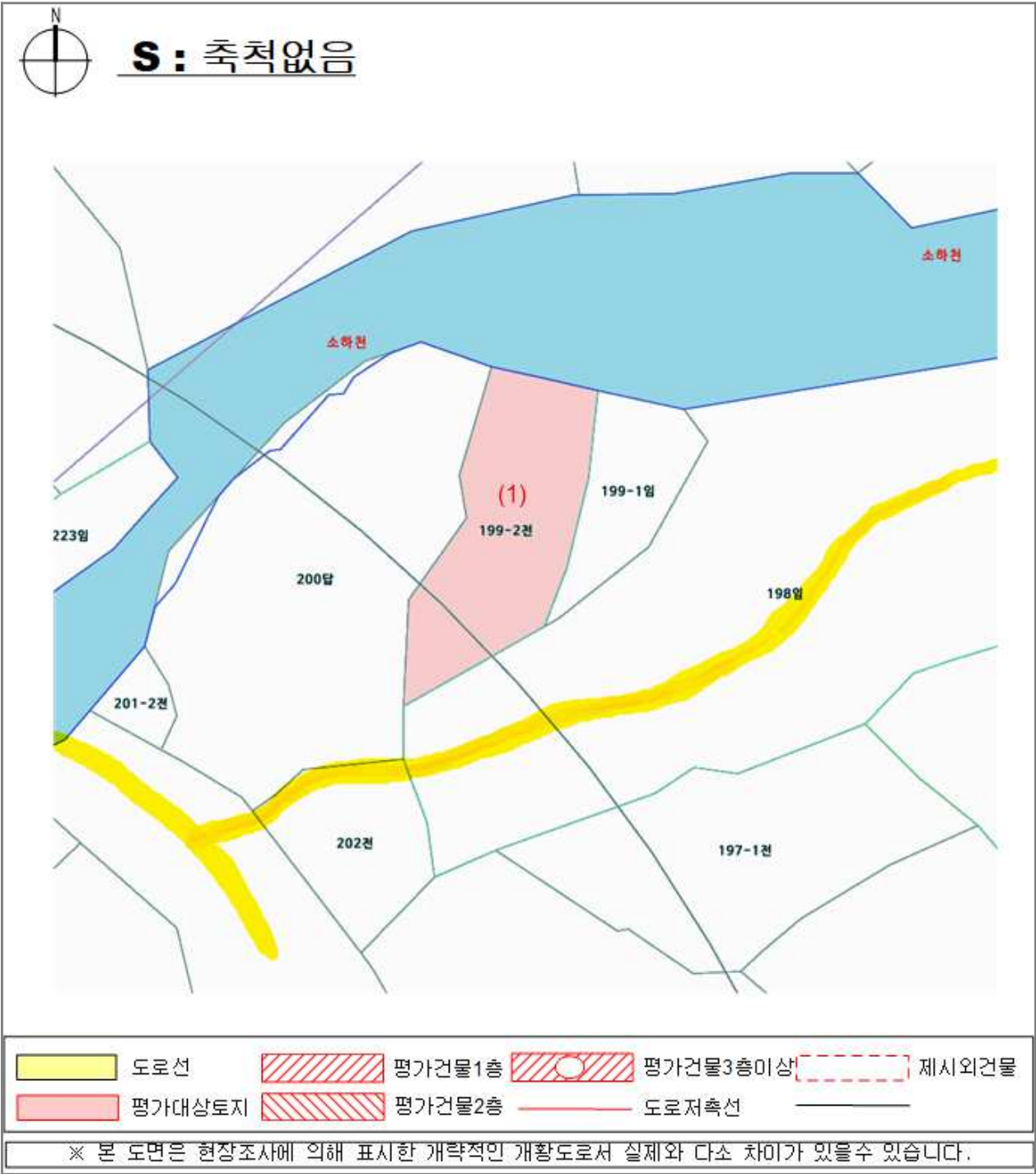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99-2번지
-------	--------------------------



지적 및 건물개황도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99-2번지
-----	--------------------------



사 진 용 지

소 재 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99-2



본건 전경자사진, 남서측 인근에서 촬영



본건 전경사진, 남측 근접촬영

사 진 용 지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99-2



본건, 남동측 근접촬영



본건 서측부분 촬영

사 진 용 지

소 재 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99-2



본건 북측부분 촬영



본건 전경사진, 북측 근접촬영

수수료 청구서

감정평가서번호 : HAF2026-04-013-L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의뢰번호 : 2025-16989-A01

삼십삼만오천오백원정 (₩335,500.-)

2026-02-02 일자 귀 제『 2025-16989-A01 』호로 의뢰하신『 이현열 소유물건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별표2"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가.평가수수료	200,000	기본수수료 ≒200,000
나.여비	97,000	시외출장: 97,000
토지조사비	-	【공부발급비】 토지이용계획 1,000 / 토지등기부 1,000 【기타 실비】 사진 6장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2,000	
임대차조사비	-	
기타 실비	6,000	
특별용역비	-	
소계	105,000	
수수료합계(공급가액)	305,000	* 1,000원미만절사
부가가치세(세액)	30,500	
총계	335,500	
기납부 착수금	-	
정산청구액	335,500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합천감정평가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58-73-00447

★ 계좌번호 ★

농협-합천군지부 : 301-0313-7731-71

합천감정평가사사무소

(TEL. : 055-932-2704 FAX. : 055-934-2704)

회 보 서

우)50232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18 (아담빌라) 106호
E-Mail : k17305@hanmail.net

TEL. 055-932-2704
FAX. 055-934-2704

문서번호 : HAF2026-04-013-L호

시행일자 : 2026. 02. 02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참 조 : -

제 목 : 감 정 평 가 회 보

1. 우리 합천감정평가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6.01.21자 귀 제 2025-16989-A01호로 의뢰하신『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99-2번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별	첨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끝.

합천감정평가사사무소